

# 1.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전용 보고

## □ 사업근거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65조
  -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(제41조), 시·도가 부담할 경비(제65조)
-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
  - A형간염, 장티푸스, 세균성이질 등 급성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, 메르스 의심환자 등 전염력이 강한 환자를 격리 치료하여 전파 방지
- 사업기간: 연중
- 지원대상: 급성감염병환자 및 메르스의심환자 등 격리치료자
- 사업내용
  - A형간염, 장티푸스, 세균성 이질 등 급성감염병환자 및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치료비 지원
  - 예산액: 50,000천원(국비(기금) 50%, 구비 50%)

## □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

- A형간염 환자 발생 급증에 따라 국고보조금 (3,000천원) 증액 교부  
[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-239호(2020.1.15.)]
  - 2019년 A형간염 환자가 급증에 따라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액 (244건 80,644천원)의 약 70%인 55,796천원(131건) 지원
- 예산 전용 방침수립('20.3.8.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과목			예산액 (시비)	변경요구액(시비)		변경 후 예산액
	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생활보건관 리향상	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관리	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	일반운영비 (201)	사무관리비 (02)	812,900		3,000	809,900
		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	자치단체등 이전(308)	자치단체 경상보조금 (01)	44,000 (22,000)	6,000 (3,000)		50,000 (25,000)

**작성 자** 질병관리과장 : 김정일 ☎2133-7660 감염병관리팀장 : 김해숙 ☎7686 담당 : 유경숙 ☎7684